

보관한다.

* 학생은 학교의 결정 사항에 대해 알리는 서면 답변을 받을 것이다.

* 학생의 입학 연기 또는 휴학으로 인해 학생 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DHA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정보가 학생에게 통보된다.

* 시드니신학대학과 소속 교육기관은 학생의 등록이 연기되거나 일시적으로 휴학하는 것에 대하여 PRISMS 를 통해 DHA 에 통보할 것이다.

* 학생의 요청과 대학의 답변이 기록될 것이다.

2. 학생의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정, 승인 및 보고

학생이나 대학이 주도하여 학생의 등록 취소를 시작할 수 있다.

시드니 신학 대학 및 그 소속 교육 기관은 학업 부정 행위 (표절, 부정 행위를 포함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사기, 부적절한 행동, 허위 진술, 비 윤리적인 행동 등, 을 수행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나 절차 진행 요구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유학생의 비행에 근거하여 학생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관련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며, 학생의 파일에 문서가 보관되어야 한다. 대학에 의해 취소된 학생은 다음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 학생의 등록을 취소하는 대학의 결정내용.
- 학생에게 SCD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대학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국가 코드 2018 의 표준 9 에 부합됨).
- 학생에게 불만 및 항소 절차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근무일 기준 20 일이 있음을 알리고 항소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절차.
- 학생이 취소를 주도한 경우, 학생의 등록 취소가 학생 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이 주도한 취소/연기/휴학 후 14 일 이내에 PRISMS 를 통해 DHA 에 통보될 것임을 통보한다.
- 20 일의 근무일이 경과되고, 학생이 불만 사항 및 항소 절차를 하지 않거나, 철회했거나 과정이 완료되어서 대학의 초기 결정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결과가 발생하면 시드니신학대학과 관련 교육 기관은 PRISMS 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의 등록 취소를 DHA 에 알려야 한다.
- 취소는 학생의 복지와 관련하여 정상참작 상황이 적용되는 20 일이 지나기 전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학생 또는 대학의 취소 및 대학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대학 기록에 보관된다.

이의 제기 절차들

1. 이의제기(appeals) – 수업 과정 학생들 (coursework students)

어떤 학생이 평가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고 믿거나, 또는 부여된 학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평가 항목이든지 그 주어진 학점에 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우선 그 학생은 관련된 교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대화 후에도 여전히 이의제기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학생은 자기가 속한 회원 학교의 학술 위원회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낙제한 최종 점수와 관련해서 회원 학교에서의 재검토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은 본부의 학술 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아래의 근거에 한하여 학술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는 회원 학교로부터 온 이의제기에 대한 확정된 결과를 수령한지 평일 십일 안에 학장에게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 그 학생은 학장에게 재검토와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들이 회원 학교에 의해 준수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 학술 위원회는 그 이의제기를 재량 것 다를 것이다;
- 학술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 될 것이다.

2. 이의제기 – 연구 학위 지원자 (research candidate)

연구 학위 지원자들은 학술 위원회의 다음의 결정에 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지원한 과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
- 학위를 수여하지 않겠다는 결정.
재-제출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 지원자는 다음의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과정 상의 변칙
- 편견 또는 선입관의 증거.

연구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 운영될 것이다.

- 지원자는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위에 언급된 결정을 통보 받은 지 30일 안에 학교의 학장에게 문서로 이의제기를 통보할 것이다.
- 이의제기를 받으면 학장은 그 문제를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 학생에게 불만 및 항소

(1) 공식적인 이의제기 통보를 받으면 상임위원회는 즉석으로 '연구 대학원 이의제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 (i) 본부 위원회의 회원인 독립 의장,
- (ii) 학술 위원회의 의장
- (iii) 대학의 학장
- (iv) 대학원 학생

(2) 학술 위원회의 아래의 결정에 불복하는 연구 학위 지원자가 제기한 이의를 확정하고 본부 위원회에 보고한다.

- (i) 지원 과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
- (ii) 학위를 수여하지 않겠다는 결정
- (iii) 재-제출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

(3) 이의제기 위원회(the Appeal Committee)는 임명된 후 21일 안에 모여야 한다.

(4) 이의제기자는 이의제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자료라도 이의제기 위원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에게 불만 및 항소

- 이의제기 위원회(the Appeal Committee)는 임명된 후 21일 안에 모여야 한다.

- 이의제기자는 이의제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자료라도 이의제기 위원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이의제기자는 또한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 앞에 출석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의제기자는 자기를 지원해줄 기능을 가진 조연자를 동반할 수 있다;
- 그 조연자가 변호나 대리자로서 행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의제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본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STUDENT GRIEVANCE POLICY AND PROCEDURE

학생 불평 해소 규정 및 절차

목적과 범위

시드니 신학대학(이하 SCD)은 학문 연구 및 개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화로우며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SCD는 학생들이 차별과 괴롭힘, 욕설과 희생제물이 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불공정함을 당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책임을 가집니다. SCD는 학생들이 간혹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불평사항이 관련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스트레스와 최대한의 보호를 받으며 일관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대응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시드니 신학대학의 학생불평 해소 규정과 절차들은 학문적이거나 비 학문적인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종류의 상황이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공급하고 있다.

정의: '교육 기구'란 SCD의 회원학교 및 한국신학부를 의미한다.

이 규정은 불평이 회원 학교의 단계에서부터 SCD 그 자체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학생 불평 해소 정책과 그 절차의 적절한 이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SCD 이사회에 있다.

SCD의 학생 불평 해소 정책과 절차는 SCD의 모든 학생들 및 교수진과 일반 직원들 모두에게 소통된다. 그것은 아래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 on the SCD website; SCD 웹사이트.
- in the SCD Handbook; SCD 핸드북.
- on each MI website; and 각 회원학교의 웹사이트.
- in each MI Handbook. 그리고, 각 회원 학교의 핸드북.

정의

'장'이란 회원 학교의 학장 혹은 본부 총장에 의해 위임된 한국신학부의 학장을 말한다.

'본부 총장실'이란 SCD 본부 사무실을 말하며, SCD 관리의 주체이며, 본부 총장이 그 안에서 자리잡고 있다. 거기에는 코스웍, 리서치, 학생관리, 재정담당 디렉터와 다양한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다. 디렉터 레벨의 직원 혹은 그 이상이 학생불평해소와 관계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